

인 재 모 집 (NCS기반 블라인드 채용)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교육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서 21세기 교육·학술정보화를 선도할 유능한 인재(계약직 및 청년인턴)를 모집합니다. 채용분야 수행직무는 모집 분야별 세부 담당업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총 67명 (계약직 47명, 청년인턴 20명)

가. 계약직(공개경쟁채용) : 총 46명

선발직렬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인원	계약기간
경영/행정	경영기획·관리	원급	1명 (휴직대체)	~ '22. 10.
	재무·회계	원급	1명 (휴직대체)	~ '22. 03.
교육정보서비스 운영	교육정책 R&D	원급	1명 (휴직대체)	~ '22. 01.
	국제협력	원급	1명	~ '21. 07.
	공공기관 연계 오픈랩 운영	원급	2명	~ '21. 12.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	원급	2명	~ '22. 02.
	에듀테크 창업지원패키지사업 운영	원급	1명	~ '22. 03.
	공공데이터개방 및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운영 ¹⁾	원급	1명 (휴직대체)	'21. 05. ~ '22. 05.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지원센터 운영	원급	1명	~ '22. 02.
	디지털교과서 활용 및 보급	원급	1명	~ '21. 12.
	실감형콘텐츠 및 디지털교과서 서비스 운영 ²⁾	원급	1명 (휴직대체)	'21. 06. ~ '22. 05.
	e학습터 콘텐츠 개발	원급	1명	~ '21. 12.
	미래형 학교도서관 모델 확산	원급	1명	~ '21. 12.
	원격교육 공공플랫폼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	원급	1명	~ '21. 12.
	대학도서관 서비스진단 및 평가 컨설팅	원급	1명	~ '21. 12.
	성인학습자 D.N.A 교육센터 사업 기획 및 구축	원급	1명	~ '21. 12.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원급	2명	~ '21. 12.
	원격교육연수 콘텐츠 내용심사	원급	1명	~ '21. 12.

선발직렬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인원	계약기간
교육정보서비스 운영	나이스(NEIS) 업무프로그램 서비스 운영	원급	1명 (휴직대체)	~ '22. 11.
	나이스(NEIS) 대국민 서비스 기능개선	원급	2명	~ '21. 12.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K-에듀파인) 운영	원급	1명 (휴직대체)	~ '22. 03.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 운영	원급	1명	~ '22. 11.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운영	원급	1명 (휴직대체)	~ '22. 06.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및 평가 ³⁾	원급	1명	~ '21. 12.
	교원 직무 연수 과정 개발 및 운영	원급	1명	~ '22. 02.
교육정보시스템 관리	e학습터 고도화	원급	2명	~ '21. 12.
	인공지능(AI) 초등수학 수업지원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원급	2명	~ '21. 12.
	전자저널 구독정보 수집·관리 시스템 개발	원급	1명	~ '21. 12.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 운영 ⁴⁾	원급	1명	~ '22. 04.
	나이스(NEIS)-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	원급	1명	~ '21. 12.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K-에듀파인) 인프라 및 보안 관리	원급	2명	~ '21. 12.
	4세대 지능형 나이스(NEIS) 구축 ⁵⁾	원급	2명	~ '22. 11.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K-에듀파인) 기능개선	원급	2명	~ '21. 12.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시스템 운영	원급	1명 (휴직대체)	~ '22. 11.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시스템 기능개선	원급	1명	~ '21. 12.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원급	1명	~ '21. 12.
	경영정보시스템 관리	원급	1명	~ '21. 12.
합계			46명	-

1) 공공데이터개방 및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운영 분야 : 2021. 5. 10.(월) 임용 예정

2) 실감형콘텐츠 및 디지털교과서 서비스 운영 분야 : 2021. 6. 1.(화) 임용 예정

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및 평가 분야 : 세종특별시 근무 예정

4)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 운영 분야 : 광주광역시 근무 예정

5) 4세대 지능형 나이스(NEIS) 구축 분야 : 세종특별시 근무 예정

나. 계약직(제한경쟁채용) : 총 1명

선발직렬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인원	계약기간
교육정보시스템 관리	4세대 지능형 나이스(NEIS) 구축	원급	1명	~ '22. 11.

※ 지원자격 : 학사 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또는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 보유자

* 빅데이터 수집·분석·설계·구축·운영 등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 경력

※ 근무지 : 세종특별시 근무 예정

다. 청년인턴(체험형) : 총 20명

채용분야	체험분야	채용인원	계약기간
경영/행정	재무·회계 및 계약 업무 지원	1명	~ '21. 08.
	복리후생 운영 지원	1명	
국제협력	국제협력 업무 지원	1명	~ '21. 07.
디지털교육(A)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에듀테크 도입 지원	2명	~ '21. 06.
디지털교육(B)	교육 공공데이터 운영 및 관리 지원	1명	~ '21. 08.
교육서비스(A)	디지털교과서 플랫폼 운영 지원 ¹⁾	1명	'21. 06 ~ 09.
교육서비스(B)	e학습터 서비스 홍보 및 활용 확산 지원	1명	~ '21. 08.
	원격교육 공공플랫폼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 지원	1명	
대학학술(A)	학술정보통계시스템 운영 지원	1명	~ '21. 08.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운영 지원	1명	
대학학술(B)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 운영 지원 ²⁾	2명	
교육행정	나이스(NEIS) 업무프로그램 서비스 운영 지원	1명	~ '21. 08.
	나이스(NEIS) 대국민 서비스 기능개선 및 홍보 지원	1명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K-에듀파인) 인프라 관리 지원	1명	
교육재정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운영 지원	2명	~ '21. 08.
정보보호	교육기관 사이버위협 분석·대응 지원	1명	~ '21. 06.
교육연수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지원	1명	~ '21. 08.
합계		20명	-

1) 디지털교과서 플랫폼 운영 지원 분야 : 2021. 6. 1.(화) 임용 예정

2)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 운영 지원 분야 : 광주광역시 근무 예정

※ 채용분야 단위로 채용하되, 입사지원서상 체험분야 우선 순위를 접수받아 임용 후 부서 배치 시 활용

2. 모집분야별 세부 담당업무(직무기술서 참고)

가. 계약직

구분	선발직렬	채용분야	담당업무
계약직	경영/행정	경영기획·관리	○ 경영실적 분석 및 중장기·연간 경영계획 수립 ○ 경영평가 등 대내외 평가 관리
		재무·회계	○ 자금 관리, 회계, 수탁사업 관리 ○ 현금, 예금, 법인카드 관리 지원
	교육정보 서비스운영	교육정책 R&D	○ 디지털교육 정책지원 연구 및 교육학술 표준화 R&D ○ 디지털교육 정책 연구 및 동향조사
		국제협력	○ 수출입은행 KSP 컨설팅 사업관리 지원 ○ 엘살바도르 교육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공공기관 연계 오픈랩 운영	○ 지역 공공기관 연계 오픈랩 사업 운영 ○ 지역 수요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	○ 에듀테크 소프트랩 운영 ○ 에듀테크 소프트랩 활성화 지원
		에듀테크 창업지원패키지사업 운영	○ 에듀테크 창업지원패키지 사업 운영 ○ 온라인교육 콘텐츠 창업 지원 운영
		공공데이터개방 및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운영	○ 에듀데이터서비스(EDSS) 운영 ○ 교육정보통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지원센터 운영	○ 온라인 교과서 선도학교 운영 지원 ○ 온라인 교과서 선도학교 지원센터 운영
		디지털교과서 활용 및 보급	○ 디지털교과서 교사지원단 운영 지원 ○ 디지털교과서 교사지원단 운영 성과관리
		실감형콘텐츠 및 디지털교과서 서비스 운영	○ 실감형콘텐츠 앱 개발 및 서비스 운영 ○ 디지털교과서 서비스 운영
		e학습터 콘텐츠 개발	○ e학습터 콘텐츠 개발 ○ e학습터 콘텐츠 품질관리
		미래형 학교도서관 모델 확산	○ 학교도서관 공간 혁신 사례집 및 매뉴얼 개발 ○ 매뉴얼 개발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 운영
		원격교육 공공플랫폼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	○ 원격교육을 위한 공공플랫폼 클라우드 임차 추진 ○ 공공플랫폼 클라우드 운영 관리
		대학도서관 서비스진단 및 평가 컨설팅	○ 대학도서관 서비스 진단 및 컨설팅 운영 ○ 대학도서관 컨설팅 수요 파악 및 전문가 그룹 운영
		성인학습자 D.N.A 교육센터 사업 기획 및 구축	○ 온-오프라인 DNA 시범 교육센터 구축 및 운영 ○ DNA 거점 교육센터 구축 및 운영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권역별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성과 관리 ○ 대학원격교육지원을 위한 교육(컨설팅) 운영
		원격교육연수 콘텐츠 내용심사	○ 원격교육연수 콘텐츠 내용심사 ○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 운영
		나이스(NEIS) 업무프로그램 서비스 운영	○ 나이스 업무프로그램 유지보수 사업 관리 ○ 4세대나이스 구축 지원을 위한 데이터정제(DQ)

구분	선발직렬	채용분야	담당업무
계약직	교육정보 서비스운영	나이스(NEIS) 대국민 서비스 기능개선	○ 교육복지(교육비 지원 및 교육급여) 프로그램 기능개선 ○ 교육제증명 무인민원발급 프로그램 기능개선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K-에듀 파인) 운영	○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운영 ○ 사용자 지원체제 운영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 운영	○ 유아학비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차세대 유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운영	○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자료 검증 ○ 사용자 교육 및 정보공시 지침 관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및 평가	○ 시도교육청 통합 취약점 분석평가 ○ 보호대책 수립 지원 및 모의훈련, 교육 등
		교원 직무 연수 과정 개발 및 운영	○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초등 교원 직무 연수 과정 개발 ○ 연수 이수자 후속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교육정보 시스템관리	e학습터 고도화	○ e학습터 플랫폼 시스템 재구조화 ○ e학습터 화상수업시스템 고도화
		인공지능(AI) 초등수학 수업지원 시스템 개발 및 운영	○ 인공지능(AI) 초등수학 수업지원시스템 구축 ○ 인공지능(AI) 초등수학 콘텐츠 개발지원
		전자저널 구독정보 수집·관리 시스템 개발	○ 전자저널 구독정보 수집·관리시스템 개발 ○ 인쇄·전자저널 대학별 구독(소장) 정보 수집 및 관리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 운영	○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 운영 ○ 국립대 응용SW(재정회계, 산학연구) 관리
		나이스(NEIS)-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	○ 예방접종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신규 연계서비스 구축 및 현장 적용 지원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K-에듀파인) 인프라 및 보안 관리	○ SLA 등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점검 ○ K-에듀파인 및 교육정보통계 보안 취약점 진단
		4세대 지능형 나이스(NEIS) 구축	○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분야 시스템 개발 ○ 나이스 학교행정 분야 시스템 개발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K-에듀 파인) 기능개선	○ 법령·제도 변경에 따른 시스템 기능 개편 ○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시스템 기능 개선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시스템 운영	○ 정보공시 시스템 운영 관리 ○ 정보공시 시스템 응용 S/W 유지보수 및 사업관리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시스템 기능개선	○ 정보공시 기능개선 및 고도화 ○ 정보공시 인프라 고도화 지원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유치원 회계시스템 기능개선 ○ 교육 콘텐츠 제작(매뉴얼, 동영상 등) 및 연수 지원
		경영정보시스템 관리	○ 경영정보시스템 기능개선(인사, 회계, 예산 등) ○ 업무 영역별 관리 기능개선 및 SW 취약점 보완
		4세대 지능형 나이스(NEIS) 구축 (제한경쟁)	○ 빅데이터 기반 나이스 시스템 구축 ○ 나이스 빅데이터 수집·분석·융합 등

나. 청년인턴

구분	채용분야	체험분야	담당업무
청 년 인 턴	경영/행정	재무·회계 및 계약 업무 지원	○ 구매·계약 관련 문서/데이터 관리 ○ 협력업체 관리 및 공공구매현황 관리 지원
		복리후생 운영 지원	○ 기관 복리후생 운영 지원 ○ 복리후생 데이터 관리 운영
	국제협력	국제협력 업무 지원	○ 수출입은행 KSP 컨설팅 사업관리 지원 ○ 엘살바도르 교육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디지털교육 (A)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에듀테크 도입 지원	○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에듀테크 도입 실증 R&D ○ 에듀테크 활용 교육과정 개발 연구
	디지털교육 (B)	교육 공공데이터 운영 및 관리 지원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대응 지원 ○ 교육 공공데이터 활용대회 운영 지원
	교육서비스 (A)	디지털교과서 플랫폼 운영 지원	○ 디지털교과서 플랫폼 서비스 업무 지원 ○ 디지털교과서 플랫폼 서비스 사용자 응대 지원
	교육서비스 (B)	e학습터 서비스 홍보 및 활용 확산 지원	○ e학습터 서비스 홍보 및 현장 활용 확산 업무 지원 ○ e학습터 서비스 현장 우수활용사례 수집 지원
		원격교육 공공플랫폼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 지원	○ 원격교육 공공플랫폼 클라우드 임차 사업 업무 지원 ○ 공공플랫폼 서비스 운영 클라우드 업무 지원
	대학학술	학술정보통계시스템 운영 지원	○ 학술정보통계시스템 운영 지원 ○ 대학도서관 대상 학술자원 현황 조사 및 통계분석 관리
		외국학술지원센터 운영 지원	○ 외국학술지원센터 운영 지원 ○ 센터 담당 실무교육 및 운영 현황 조사 등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 운영 지원	○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 운영 지원 ○ 코러스 운영 및 사업 관리 지원
	교육행정	나이스(NEIS) 업무프로그램 서비스 운영 지원	○ 나이스 업무프로그램 대외 연계 업무 지원 ○ 나이스 운영사항 홍보 지원
		나이스(NEIS) 대국민 서비스 기능개선 및 홍보 지원	○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 기능개선 지원 ○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 홍보활동 지원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K-에듀파인) 인프라 관리 지원	○ K-에듀파인 H/W 및 S/W 성능 개선 지원 ○ K-에듀파인 관련 데이터 분류 및 정리 지원
	교육재정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운영 지원	○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시스템 운영 지원 ○ 공시자료 검증 및 사용자 교육 지원
	정보보호	교육기관 사이버위협 분석·대응 지원	○ 교육기관 사이버위협 분석 업무 지원 ○ 사이버위협 분석 및 대응을 위한 예산 업무 지원
	교육연수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지원	○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지원 ○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지원

3.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가. 응시자격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인사규정」 제18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등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구분	자격요건	기타사항 및 관련근거
계약직	• (공개경쟁채용)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하며, 전공, 어학 성적 등에 관계없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 가능 -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학사 졸업예정자일 경우 채용분야별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졸업증명서 발급 가능 시 지원 가능 - 전문학사로서 해당 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고졸자로 해당 분야 4년 이상 경력자	• 우리 원 인사규정 제15조 및 별표2호 <임용자격기준> 준용
	• (제한경쟁채용) '학사 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또는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 보유자 * 빅데이터 수집·분석·설계·구축·운영 등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 경력 ※ 학위 전공 제한은 별도로 없으며, 온라인 입사지원서 작성 시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력증명서 제출(업로드) 필요	• 담당업무는 관련 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하며,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청년인턴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임용일 기준)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 고졸자는 우리 원 「인사규정」 '임용자격기준' 중 '수행업적 및 기타자격으로 상기 항목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자' 조문을 준용

나. 우대사항

- 취업지원(보호)대상자는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 가점 부여
 - 취업지원(보호)대상자는 증빙서류*를 입사지원서 마감시간(3월 22일 18:00)까지 채용시스템에 등록(PDF)하고 등기우편(인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 ※ 등기우편은 지원서 마감시간(3월 22일 18:00)까지 우체국 소인이 있는 경우 접수 유효
 -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 법령 등에 취업지원 가점부여 의무가 명시된 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 * 채용시험 가점비율과 제출기관(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기재되어 있는 증빙서류에 한함
- 장애인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면접전형 시 가점 부여
- 경력단절여성, 대구·경북 지역인재, 비수도권 지역인재, 청년 미취업자(임용일 기준 만34세 이하인 자),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자 등은 우대점 부여

4. 응시방법

가. 원서접수 : KERIS 채용홈페이지(keris.saramin.co.kr)의 '채용공고'에 등록

나. 접수기한 : 2021년 3월 22일(월) 18:00까지 온라인 등록

다.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온라인 등록), 증빙서류(취업지원(보호)대상자에 한함)

구분	관련사항	비고
공통	- 지역인재, 청년미취업자, 장애인 등은 입사지원서 해당란에 표기 -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는 경력사항에 필수 입력	
취업지원 대상자	- 입사지원서 해당란에 표기하고, 증빙서류를 지원서 마감시간(3월 22일 18:00)까지 등기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인재경영실 인사담당자 앞 - 취업지원(보호)대상자는 입사지원서 해당란에 표기하고 증빙서류를 제출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취업지원 가점부여 의무가 명시된 자 ([붙임 2] 참고) ※ 등기우편은 지원서 마감시간까지 우체국 소인이 있는 경우에만 접수 유효	기재착오 및 누락시 가점부여 등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허위기재가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5. 전형절차 및 일정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대구 본원)	최종합격자 발표	임용(예정)일
3월 22일 18:00까지	3월 31일	4월 5일 ~ 4월 9일 (분야별 1일 실시 예정)	4월 19일	4월 30일

※ 서류전형은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내에서 선정하며, 최종합격자는 면접전형 종료 후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원장이 최종 결정 (단,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예비합격자의 경우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 선발하며, 최종합격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임용포기 또는 임용 결격사유 발생 시 예비합격자 중 최종 합격자 결정(예비합격 순)

※ 전형일정은 우리 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일부 분야의 경우 별도일자에 임용 예정

- (계약직) 공공데이터개방 및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운영 분야 : 2021. 5. 10.(월) 임용 예정
- (계약직) 실감형콘텐츠 및 디지털교과서 서비스 운영 분야 : 2021. 6. 1.(화) 임용 예정
- (청년인턴) 디지털교과서 플랫폼 운영 지원 분야 : 2021. 6. 1.(화) 임용 예정

6. 제출서류(면접전형 시 서면제출, 본인 확인 및 입사지원서 진위여부 확인용)

가.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 증명서 1부

※ 최종학력이 대학원 이상 졸업자인 경우 대학 및 대학원 각각 제출

나. 입사지원서 상 기재한 교육사항 이수내역 증빙자료(성적증명서 등)

※ 성적증명서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학교교육 내역 포함 필수

다.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포함) 각 1부

라. 외국어 및 수상·자격·면허 사본(입사지원서 상 외국어 및 수상·자격·면허 사항 입력자 필수 제출) 각 1부

※ 입사지원 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3급 이상 소지' 기재자의 경우 사본 제출(해당자 필수)

마.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수습확인서 각 1부(입사지원서 상 경험/경력사항 입력자에 해당)

※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제출

*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출력

바. 장애인 관련 법률에 의한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1부

사.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국적취득사실증명서 1부(해당자)

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해당자)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층 확인서 1부(해당자)

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해당자)

7. 기타 안내사항

가. 채용 관련 청탁자, 비리연루자, 부정합격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되며, 우리 원 채용시험에 대해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함

나. 접수마감시한에 임박해서는 지원서 접수 폭증으로 인해 입사지원서 작성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시간 이전에 시간여유를 두고 입사지원서 작성 및 접수 요망

다.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출신지, 출신지역 등 개인 인적사항이 입력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

라. 입사지원서 작성 후 최종마감 시한 전까지는 자유로운 열람과 수정이 가능하며, 지원서 제출 완료 후에는 수정 불가

마. 입사지원서에 본인 부주의로 인한 표기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으로 하며, 지원 자격의 허위 판명, 각종 증명서 미제출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입사 후에도 임용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우리 원 입사시험 지원 제한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바.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전형과정에서 일정 수준에 미달할 경우 채용 예정 인원을 축소 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사. 각 전형별 이의가 있는 경우 본원 「인사관리규칙」 제13조의 2(채용 불합격자의 관리)에 의거, 【붙임 3】 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bullsoneshot@keris.or.kr)

아. 채용과정 중 제출 서류에 대해 반환청구를 요청하는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붙임 4】 양식을 작성 및 서명 날인하여 이메일로 제출 (bullsoneshot@keris.or.kr)

※ 최종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에 요청 시 반환(전자서류 제외)

8. 채용 관련 문의처

구분	선발직렬	채용분야	문의처
계 약 직	경영/행정	경영기획·관리	053-714-0460
		재무·회계	053-714-0355
	교육정보 서비스운영	교육정책 R&D	053-714-0352
		국제협력	
		공공기관 연계 오픈랩 운영	
		에듀테크 소프트웨어 구축 및 운영	053-714-0381
		에듀테크 창업지원패키지사업 운영	
		공공데이터개방 및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운영	053-714-0226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지원센터 운영	053-714-0264
		디지털교과서 활용 및 보급	
		실감형콘텐츠 및 디지털교과서 서비스 운영	
		e학습터 콘텐츠 개발	053-714-0383
		미래형 학교도서관 모델 확산	
		원격교육 공공플랫폼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	053-714-0418
		대학도서관 서비스진단 및 평가 컨설팅	053-714-0359
		성인학습자 D.N.A 교육센터 사업 기획 및 구축	053-714-0379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원격교육연수 콘텐츠 내용심사	
		나이스(NEIS) 업무프로그램 서비스 운영	053-714-0407
		나이스(NEIS) 대국민 서비스 기능개선	053-714-0462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K-에듀파인) 운영	053-714-0461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 운영	053-714-0295

구분	선발직렬	채용분야	문의처
계약직	교육정보 서비스운영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운영	053-714-030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및 평가	053-714-0495
		교원 직무 연수 과정 개발 및 운영	053-714-0410
	교육정보 시스템관리	e학습터 고도화	053-714-0383
		인공지능(AI) 초등수학 수업지원 시스템 개발 및 운영	053-714-0418
		전자저널 구독정보 수집·관리 시스템 개발	053-714-0359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 운영	062-530-4316
		나이스(NEIS)-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	053-714-0407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K-에듀파인) 인프라 및 보안 관리	053-714-0461
		4세대 지능형 나이스(NEIS) 구축	044-410-1203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K-에듀파인) 기능개선	053-714-0292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시스템 운영	053-714-0302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시스템 기능개선	053-714-0302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구축 및 운영	053-714-0289
		경영정보시스템 관리	053-714-0496
		4세대 지능형 나이스(NEIS) 구축 (제한경쟁)	044-410-1203
청년인턴	경영/행정	재무·회계 및 계약 업무 지원	053-714-0355
		복리후생 운영 지원	053-714-0322
	국제협력	국제협력 업무 지원	053-714-0352
	디지털교육(A)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에듀테크 도입 지원	
	디지털교육(B)	교육 공공데이터 운영 및 관리 지원	053-714-0226
	교육서비스(A)	디지털교과서 플랫폼 운영 지원	053-714-0264
	교육서비스(B)	e학습터 서비스 홍보 및활용 확산 지원	053-714-0383
		원격교육 공공플랫폼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 지원	053-714-0418
	대학학술	학술정보통계시스템 운영 지원	053-714-0359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운영 지원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 운영 지원	062-530-4316
	교육행정	나이스(NEIS) 업무프로그램 서비스 운영 지원	053-714-0407
		나이스(NEIS) 대국민 서비스 기능개선 및 홍보 지원	053-714-0462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K-에듀파인) 인프라 관리 지원	053-714-0461
	교육재정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운영 지원	053-714-0302
	정보보호	교육기관 사이버위협 분석·대응 지원	053-714-0495
	교육연수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지원	053-714-0410

※ 채용 일정 관련 문의 : 053-714-0398, bullsoneshot@keris.or.kr

[붙임 1] 비수도권 지역인재 세부기준

(비수도권 지역인재)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 · 경기 · 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지방대학)를 졸업(예정) · 중퇴한 자 또는 재학 · 휴학 중인 자

(이전지역 인재)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이하 “이전지역 학교” 라 함)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 2개 이상 대학 졸업의 경우, 지원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판단

□ 비수도권 지방학교의 범위

가.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로서,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 기술대학, 각종학교’
-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로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 예시 : 고려대 세종캠퍼스, 동국대 경주캠퍼스, 연세대 원주캠퍼스, 단국대 천안캠퍼스, 상명대 2캠퍼스(천안), 홍익대 세종캠퍼스, 건국대 글로벌캠퍼스 등
- ※ 2021년도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 공시 기준으로 분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경기·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
-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 제3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대학

나.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

-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경기·인천 지역대학
-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 사이버대학, 디지털 대학 등 「평생교육법」 상의 평생교육시설
-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

□ 그 외의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경우

-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
-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 대학원 및 사이버·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 이전지역 지역인재의 경우 광역 시·도를 기준으로 판단

[붙임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부여 관련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5.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제30조(취업지원 실시기관)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2.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公·私企業體) 또는 공·사단체(公·私團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나.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가.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나.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취업지원) ① 국가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②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국선열의 유족
2. 애국지사 및 그 가족 및 유족

3.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 이 경우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의 기준과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순국선열의 유족 및 애국지사

나. 애국지사가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애국지사의 가족

나. 애국지사가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다.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지원을 할 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제30조,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2항·제3항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가구당 3명(취업지원 대상자 중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는 3명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에게만 취업지원을 한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취업지원) 국가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2.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3.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

②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37조 및 제41조에 따른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제37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41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34조(취업지원 실시기관)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2.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公·私企業體) 또는 공·사단체(公·私團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

3. 사립학교

제35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제3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 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직급·직위와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9조(취업지원) 국가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2.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5.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 ②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1명에게만 실시한다.
- ③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25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21조(취업지원 실시기관)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2.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公·私企業體) 또는 공·사단체(公·私團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
3. 사립학교

제22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가. 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나. 제2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가. 제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나. 제2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다. 삭제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 계급·직급 및 직위,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취업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1.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
3. 수당지급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③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3항, 제30조,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4항 중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1급·2급·3급·4급 또는 5급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본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취업지원) 국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2.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5. 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②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1명에게만 실시한다.

③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22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20조(취업지원 실시기관)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2.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公·私企業體) 또는 공·사단체(公·私團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
3. 사립학교

제24조(채용시험의 가점)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나. 제19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가. 제1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나. 제1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 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또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 예정 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직급 및 직위,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임 3] 채용 이의신청서

2021년 제1차 직원(계약직 및 청년인턴) 채용 이의신청서			
수험번호		성 명	
생 일		연락처	
이메일			
이의신청 내용			
2021년 월 일 신청인 (인)			

※ 신청시 유의사항

-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바라며, 회신은 이메일 또는 연락처를 통해 시행합니다.
- 사실관계 확인 기간에 따라 답변기간이 늦어질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붙임 4]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
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귀하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